



인권센터 업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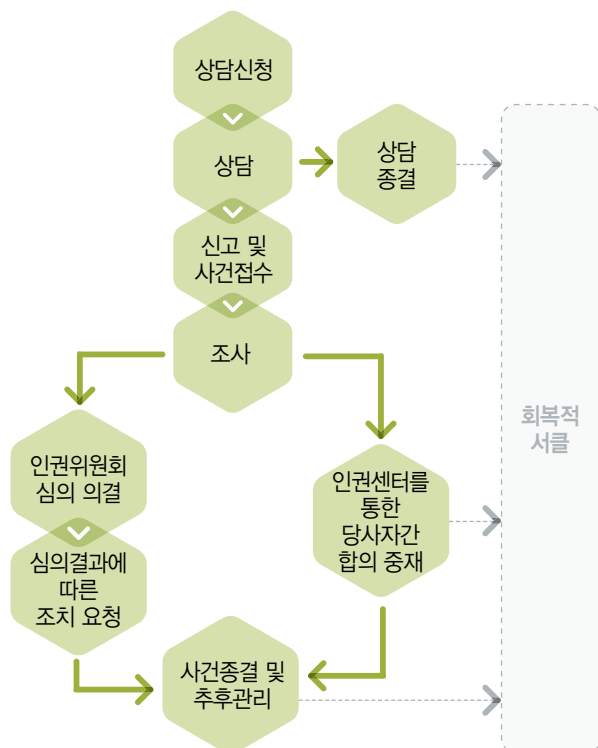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내 각종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피해상담, 신고 접수 및 사건 조사
-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법적·의료적 지원 연계
- 피해회복을 위한 프로그램(ex. 회복적 서클) 운영
- 인권교육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인권침해와 성폭력 등 사례에 대한 조사와 연구



인권센터 사건처리절차



*회복적서클은 사건관련자 모두의 피해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필요 시 선택적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센터 이용방법

상담신청
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신청서 양식 작성



센터 대표 이메일(helper@skku.edu)로
신청서 제출



일정 협의 후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진행

전화
문의

- 인사캠: 02) 760-1299
- 자과캠: 031) 290-5682



상담
시간

- 월~금 10:00~17:00



대표
이메일

- helper@skku.edu



홈페이지

- <https://helper.skku.edu>



“
인권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는

전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학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SKKU Human Rights Center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다산경제관 3F ☎02-760-1299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복지회관 3F ☎031-290-5682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여러 의견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안을 해결합니다.

당사자 개인 신상과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의 건전한 대학생활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성희롱과 성폭력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기준이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 **교수(강사)-학생 간** : 강의 중 또는 공적·사적 술자리에서 음담패설, 외모비하 등의 언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하는 경우,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학점 및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학생을 성추행, 성폭행 하는 등의 행위
- **선배-후배(혹은 동기) 간** : MT, 새터, 축제 등의 각종 학교 행사와 강의실, 동아리, 화식장소 등의 공적·사적 성격을 불문한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추행 혹은 강간 등의 행위
- **기타** :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남·여성 휴게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 술에 취한 동료 또는 학우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타인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처하기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피해발생 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였거나 대면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거나 편지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의 영향과 행위증거·책임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시간과 장소, 날짜, 구체적 행위, 느낌 등 피해 정황과 사실을 기록합니다. 목격자, 이메일, 카톡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로 문제제기 받은 경우

-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적극적인 고의가 없어도 성희롱 피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남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가해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합니다.
- 성희롱의 경우,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없는지 성찰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이 주변에서 발생한 경우

- 성희롱·성폭력은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방식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에게 '과민 반응을 한다'거나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무마시키지 않고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사건을 노출하며 소문을 내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동아리, 소모임 등 공동체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인권센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